

쟁점 1 : 사이버 모독죄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조 화 순 (연세대학교)

I. ‘사이버모욕죄’ 논쟁과 권력

촛불시위와 몇몇 연예인의 죽음 이후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은 찬성과 반대의 여론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현행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단순모욕에 대한 처벌규정보다 처벌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사람을 모욕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발의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공소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이버모욕죄’가 입법화될 경우 악성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인터넷의 폐해

를 줄이겠다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근간이 되는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찬반의 논의는 어떤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발달 초기에는 인터넷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네그로폰테(Nicolas Negroponte)와 같은 학자는 사이버공간을 창출한 정보혁명이 위계적인 사회를 수평적인 사회로 바꾸고 탈중앙집권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시각은 인터넷은 그 자체로 두면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와 문명을 수립되고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는 없다. 유명 연예인을 죽음으로 이끈 인터넷상의 비방과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이 된 아이들, 포르노의 난무,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우리가 꿈꾸었던 인터넷 유토피아(utopia)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매체적 특성은 시민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있다. 푸트남(Robert Putnam)의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인터넷의 낮은 비용은 신뢰성, 호혜성과 같은 덕목의 달성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네티즌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인터넷을 통해 현실세계의 불평등, 폭력, 위계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기대는 멀게만 느껴진다.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질서와 규범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는 정부의 카드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라면 실망스럽다. '사이버모욕죄'의 발의는 정부와 여당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효율성'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인터넷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현재의 인터넷 댓글 문화 역시 인터넷의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의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작품이다. 지금껏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터넷 사업을 육성하는 데만 역점을 두고,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의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이버모욕죄'라는 손쉬운 방법을 들고서 정보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역시 효율성을 최우선순위로 해온 정부와 정치권다운 움직임이다.

현재의 논의는 '사이버모욕죄'가 제정될 경우 실효성의 여부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가치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떠나르기' 등으로 인한 사이버 인격 침해 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발의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피해는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지만, 손해배상, 가처분 같은 제도가 사후적인 조치라는 점을 들어 기존 형법이 아니라 상향조정된 법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이버모욕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임시 차단 조치’를 통해 사이버 모욕을 규제할 수 있고, 현행법상 형법에 이미 모욕죄가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형포털의 언론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털의 뉴스 편집에 제한을 두는 신문법 개정안과 포털의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버모욕죄’ 찬반의 논란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모욕죄’가 사이버공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기술이 채택되고 어떤 인터넷 질서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인터넷 상의 참여자들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익명제로 할 것인가, 실명제를 할 것인가?’, ‘포털 사업체에 대한 법률을 허가제로 할 것인가, 신고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 권력관계와 이익이 변화한다. 정부가 인터넷 포털의 뉴스 편집을 언론행위로 규정하면 이러한 해석은 포털의 시장 지배력, 기존 언론사의 영향력과 이익, 정치권의 영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모욕죄’는 ‘누가,’ ‘어떻게’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터넷은 현실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맥락과 시대를 반영하며 발전한다. 인터넷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와 절차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

인지는 정보사회의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장의 행위자들이 기술의 채택과 질서의 정립 과정에 참여해 그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는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낳아 왔다.

II. 인터넷 유포피아를 위하여

초기의 인터넷 이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격리되어 인터넷이 스스로 운영되어 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인터넷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의 초기에 믿었던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토플러(Toffler)식의 핑크빛 전망은 이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인터넷 공간은 권력과 이해의 공간이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깨려한다. 인터넷을 무정부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초국가적 특징을 이용해 갖가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포르노 비디오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포한다면 한국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삶의 복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서도 인터넷 규제방식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법적·정책적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조정되어왔다. 인터넷 규제에 관한 지배적 담론은 정부규제,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자율규제(self-regulation)이다. 정부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국가가 법규를 제정하여 인터넷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탈규제는 규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전제하지만 기본권 존중의 입장에서 인터넷 이해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다양한 민간 주도 규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시장의 기업들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인터넷 공간의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규제주체로서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차적인 이해관계 집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공간의 전체적인 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일종의 지식의 관문인 포털(portal)은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구글아키(Googlearchy)’가 지칭하는 것처럼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익(interest)’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채택한다. ‘사이버모욕죄’, 콘텐츠 규제, 검색의 논리와 결과의 순위, 알고리즘의 설정방식은 지식과 정보의 구조적 권력의 틀을 의미하고 포털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이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user)들은 규칙을 제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시민들은 실세계의 하향식 의사결정보다 상향식의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용자, 규칙 위반자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

로 남아있다.

셋째,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주체는 국가(state)로 국가는 인터넷에 대해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인터넷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며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한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점은 다른 이해주체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국가 역시 인터넷 공간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혹은 이해주체들과 경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 선이 아니라 부처의 이익,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인터넷 관련 업체는 정보기술의 기능적인 합리성을 강조해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범죄 예방 등의 편리한 기능에 주목해 왔다. 정부는 효율성 획득이라는 혜택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능가한다는 입장에서 인터넷 정책을 펼쳐 왔다. 예를 들어 정부는 포르노그래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오히려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정부는 촛불시위 이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법률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런데 2008년 촛불시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다중(multitude)'을 등장시키고 있다. 다중은 목적 지향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진행해오던 공중(公衆)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이다. 다중은 보다 세분화되고 일상적인 이슈(issue)를 사회 의제(social agenda)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집되고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그 문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방어적 입장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을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민주주의의 실현, 삶의 복지를 위한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이버모욕죄’가 한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대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버모욕죄’가 발의되면 소위 ‘악플러’ 들은 악의적 인터넷 댓글을 줄이기보다는 법의 규정을 피하는 방법을 고안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댓글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구조, 댓글의 구조를 바꾸는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모욕죄’를 계기로 논의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모욕, 악플, 개인정보의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기술과 좋은 정보문화가 조응할 때 발전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정보문화를 만들고 좋은 문화는 좋은 기술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인터넷의 특성에 맞는 법·제도·규범을 정립해 나가는 정보 문화운동과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효율성과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변화하는 인터넷의 의견들을 정책수립의 장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 담당 비서관을 두어 인터넷 여론을 주시하고 촛불과 같은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발견되는 인터넷 여론과 토론이 오프라인의 제도권으로 반영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중은 정치참여를 통해 사안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

영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전자대화 프로젝트 (electronic dialogue project)’ 처럼 정부는 다양한 사람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토론과 성찰을 보장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